

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

1999년 7월28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년 6월 23일,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7월 27일

다. 상정일자 :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'99년 7월27일)상정,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 신만희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문화예술 진흥, 지역사회 정보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된 평창군립도서관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도서관 시설의 사용, 도서의대출 및 열람등의 근거를 정함
(안제4조)
- 시설의 사용료,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교육기관 및 민간사회단체(법인)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

- 정함(안 제9조)
- 군수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(안제10조)
- 수탁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근거를 정함(안제11조, 제12조)
- 군수는 수탁자에게 대하여 감사및조사를 할 수 있는 감독근거를 정함(안제14조)
-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(안제24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■ 관련법을 검토하여 보면

-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「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」로 규정되어 있고,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이를 설립·운영하는 당해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
-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사무중 조사, 검사, 검정,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,의무와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

■ 종합검토결과

- 본 조례는 진부면 하진부리 166-18번지 평창군립도서관 운영에

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용허가,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,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, 사용자 변상책임, 사용자의 설비등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과

- 위탁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, 수탁자의 책무, 감독, 위탁의 철회,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방법등을 근거로 정하고 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민간위탁의 설치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첨 부 :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부